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29 발의연월일: 2020. 11. 11.

발 의 자: 박상혁 · 서삼석 · 김철민

이정문・김수흥・허 영

박재호 · 김정호 · 정필모

민형배 · 강준현 · 최인호

김윤덕 · 임종성 · 윤후덕

송옥주 · 정태호 · 진성준

의원(18인)

제안이유

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은 도로 인프라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'자율협력주행'으로 발전하고 있으나, 이와 동시에 자동차의 지능화 및 연결성 확대는 해킹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이에 도로의 노변기기와 차량에서 생성하는 통신 메시지의 신뢰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기위해서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가 필요하나, 현행법상 관련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.

이에 따라,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

구축·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인증관리체계를 관리·감독·운영하는 최상위인증기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,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함(안 제27조)
- 나.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 고, 인증기관의 자격요건을 고시함(안 제28조)
- 다. 인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서 관리에 관한 사항, 식별 및 증명정보 관리, 시설 및 장비 보호에 관한 사항, 수수료 정 책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(안 제29조).
- 라.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서 종류,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(안 제30조).
- 마. 인증기관의 안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을 담보하도록 하

- 기 위해 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 성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 점검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부여함(안 제33조).
- 바.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인증기관에게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 예방·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 복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34조).
- 사.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인증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함(안 제38조).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장 총칙

제2조제1항제3호 중 "자율주행협력시스템"을 "자율협력주행시스템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"자율협력주행 인증"이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,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증명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.
- 8. "자율협력주행 인증서"란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성요소 간 통신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의 구성요소 등을 식별하고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- 9. "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"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기록의 관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.
- 10. "인증기관"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를 발급, 관리 및 폐지할 수

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.

- 11. "가입자"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를 발급받은 개체를 말한다.
- 12. "이용자"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내 역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\

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

제4조제1항제3호 중 "자율주행협력시스템"을 "자율협력주행시스템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자율주행협력시스템"을 "자율협력주행시스템"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"자율주행협력시스템"을 "자율협력주행시스템"으로 한다.

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

제2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"자율주행협력시스템"을 각각 "자율협력 주행시스템"으로 한다.

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39조부터 제41조로 하고, 제26조 다음에 제4장(제27조부터 제38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

- 제27조(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관리·감독·운영하는 최상위 인증기관으로서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
 - 2.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
 - 3.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, 안전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
 - 4.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개발·보급 및 표준화 연구
 - 5.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
 - 6.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관리체계 관리·감독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 증관리센터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(「한국 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)에 위탁할 수

있다.

- ④ 그 밖에 인증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인증기관 등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 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정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 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.
 - 1.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다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
 - 라. 제31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(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정한다)
 - 2. 제31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
 -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·재정능력·시설 및 장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

한다.

- ④ 그 밖에 인증기관의 종류와 인증업무의 내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9조(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담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(이하"인증관리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② 인증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자율협력주행 인증서(이하 "인증서"라 한다)의 발급·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
 - 2. 식별 및 증명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인증기관 시설 및 장비의 보호에 관한 사항
 - 4. 수수료 종류 및 내용 등 수수료 정책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 관리 및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
- 제30조(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)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(이하 "인증업무준칙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인증서 종류
 - 2. 인증서 발급, 폐지 등 인증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

- 3.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등 각종 제한, 의무사항
- 4.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공고설비 및 방법
- 5.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 보호조치
- 6. 인증기관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
- 7. 개인정보보호 정책
- 8.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
-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 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- ④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1조(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

경우

- 2.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 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업무를 개 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
- 5.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인증서 등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계할수 없는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인증관리센터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서 등을 인수하도록명할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, 제2항에 따른 인계·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2조(시정명령)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- 1.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2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
- 2. 제29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3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 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4. 제33조에 따른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제34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장애 예방·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6.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
- 7.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제33조(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보호조치 의무)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(이하 "안전성 보호조치"라 한다)를 취하여야한다.
 -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국토

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성 보호조치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·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·장부·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일시, 목적,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 계획을 검사 개시 7일전까지 해당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.
- ⑤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·방법,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검사의 절차·방법·출입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계획의 통 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4조(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예방·대응 등)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 주행 인증관리체계을 안정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 예방·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장애 예방,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발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35조(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)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.
 - 1.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
 - 2.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해당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
 - 3. 제36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
- 제36조(인증서의 폐지) ① 인증기관 및 인증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여 야 한다.
 - 1. 부정행위 검증 자격이 있는 인증기관의 검증에 의하여 폐지하여 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
 - 2. 그 밖에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
 - ② 인증기관 및 인증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37조(과징금의 부과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- 제38조(배상책임 및 보험가입)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인증기관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9조(종전의 27조)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보칙

제41조(종전의 29조)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중 "제19조"를 "제19조 및 제38조"로 한다.

제6장 벌칙

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

-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4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 - 1.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인증기관에게 인 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
 - 2.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 - 3.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예방·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
 - 4.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장 총칙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①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" <u>자율주행협력시스템</u> "이란	3 <u>자율협력주행시스템</u> -
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5호	
에 따른 신호기, 같은 조 제16	
호에 따른 안전표지, 「국가통	
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2조	
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	
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	
능을 지원・보완하여 효율성	
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「국	
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	
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	
체 계 를 말 한 다 .	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"자율협력주행 인증"이란 자
	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
	는 통신 등의 신뢰성 및 안전
	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
	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증명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.
- 8. "자율협력주행 인증서"란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성요소 간 통신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의 구성요소 등을 식별하고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- 9. "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 계"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기록의 관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.
- 10. "인증기관"이란 자율협력주 행 인증서를 발급, 관리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.
- 11. "가입자"란 인증기관으로부 터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를 발 급받은 개체를 말한다.
- 12. "이용자"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내 역무를 이용 하는 자를 말한다.

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의 도입·확산과 자율주행 기 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- 1. ~ 2. (생략)
- 3. <u>자율주행협력시스템</u>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4. ~ 5. (생 략)
- ② ~ ⑤ (생 략)

제5조(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의효과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,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·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 략)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	
·	
1. ~ 2. (현행과 같음)	
3. <u>자율협력주행시스템</u>	
4. ~ 5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⑤ (현행과 같음)	
제5조(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	
조사) ①	
자율협력주행시스템	
<u> </u>	
② ~ ③ (현행과 같음)	

이 요추지

- 제6조(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) 제6조(기
 - ① ~ ② (생 략)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 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 설의 개선 및 유지·보수, <u>자율</u> 주행협력시스템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 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 <신 설>

제17조(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) (생 략)

제21조(<u>자율주행협력시스템</u>의 구축)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운행을 위하여 <u>자율주행협력시</u>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구축·운영할수 있다.

세6소(사율구행 안선구간의 시성)
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
자율
<u> 협력주행시스템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
이용환경 조성
제17조(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
대한 평가) (현행과 같음)
제21조(<u>자율협력주행시스템</u> 의 구
축)
자율협력주행
시스템
<u>.</u>

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26조(해외진출 및 국제협력) 제26조(해외진출 및 국제협력) (현행과 같음)

>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

- 제27조(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관리·감독·운영하는 최상위 인증기관으로서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의 구축 및 운영
 - 2.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인 증기관에 대한 관리 · 감독
 - 3.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 치에 대한 심사, 안전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
 - 4.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 술개발·보급 및 표준화 연구
 - 5.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 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
 - 6.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 등과

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업 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율협 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구축・ 운영해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관리체계 관리· 감독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한 국교통안전공단(「한국교통안 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 전공단을 말한다)에 위탁할 수있다.
- ④ 그 밖에 인증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인증기관 등의 지정 등)
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
 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
 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
 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

있는 자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 단체 또는 법인에 한정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.

- 1.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

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

 법인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
 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
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
 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
 자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다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

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

 실 또는 정지된 자
 - 라. 제31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(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.)
- 2. 제31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

법인

-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술능력·재정능력·시 설 및 장비,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갖추어야 한다.
- ① 그 밖에 인증기관의 종류와 인증업무의 내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9조(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 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담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(이하 "인증관리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② 인증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인증서의 발급·폐기 등 관 리에 관한 사항
 - 2.
 식별 및 증명정보의 관리에

 관한 사항
 - 3. 인증기관 시설 및 장비의 보

호에 관한 사항 4. 수수료 종류 및 내용 등 수 수료 정책에 관한 사항

 5. 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 관리

 및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

제30조(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 칙 등)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(이하 "인증업무준칙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하며,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인증서 종류
- 2. 인증서 발급, 폐지 등 인증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
- 3.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등 각종 제한, 의무사항
- 4.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

 정보의 공고설비 및 방법
- 5.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 보호조치

- 6. 인증기관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
- 7. 개인정보보호 정책
- 8.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
-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 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 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- ④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1조(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 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한 한다.

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 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
- 5.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아니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

된 인증기관은 인증서 등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 서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 서 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, 제2항에 따른 인계·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시정명령) 국토교통부장관 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 를 명할 수 있다.

1.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

- 제2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 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발 생한 경우
- 2. 제29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아니한 경우
- 3. 제3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4. 제33조에 따른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제34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장애 예방 ·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하거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6.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

- 7.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 는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제33조(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 전성 보호조치 의무) ① 인증 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(이하 "안전성 보호조 치"라 한다)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 의 안전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.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성 보호조치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·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

시설 및 장비와 장부·서류 기 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, 목적,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 계획을 검사 개시 7일전까지 해당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.
- ⑤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보 고의 절차·방법,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검사의 절차·방 법·출입, 제4항에 따른 검사 계획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.

제34조(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예 방・대응 등)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・관리하기 위하여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등이 포함된 장애 예방・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

<신 설>

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체계의 장애 예방,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발 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제35조(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)
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.

- 1.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
- 2.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

 를 발급한 해당 인증기관의

 지정이 취소된 경우
- 3. 제36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 가 폐지된 경우

제36조(인증서의 폐지) ① 인증기 관 및 인증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증서

를 폐지하여야 한다.

1. 부정행위 검증 자격이 있는 인증기관의 검증에 의하여 폐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
2. 그 밖에 인증서의 신뢰성이 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

② 인증기관 및 인증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37조(과징금의 부과)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사회 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기타 공 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

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제38조(배상책임 및 보험가입)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. 다만, 인증기관이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.

제5장 보칙

제27조·제28조 (생 략)

<신 설>

제29조(벌칙) 제19조를 위반하여 제41조(벌칙) 제19조 및 제38조--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 설>

<신 설>

제39조 · 제40조 (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)

제6장 벌칙

제42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 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 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1.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인증기 관에게 인증서 등을 인계하지

- <u>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</u> <u>자</u>
- 2.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・검사를 거부・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3.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 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예방·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
- 4.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
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
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